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나30428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나3042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가단113400 판결

##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피고, 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변론 종결2024. 8. 27.

판결 선고2024. 10. 8.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가단113400 판결

##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 청구취지

피고 B는 원고에게 18,662,998원 및 그중 9,611,772원에 대하여 2023.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8.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5,061,2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25,061,2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러한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 C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의 "피고의 무자력 등"을 "피고 B의 무자력 등"으로, 제13행의 "B의"를 "피고 B의"로, 제14행의 "H, B 및 피고들"을 "H과 자녀인 피고들을"로, 제16행의 "피고에게"를 "피고 C에게"로, 제17행의 "피고 및"을 "피고 C 및"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4쪽 아래에서 제7행의 "B에"를 "피고 B(이하 이 제3항에서는 "피고 B"를 "B"라고 하고, "피고 C"를 "피고"라고 한다)에"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의 "주장 자체의 의할지라도"를 "주장 자체에 의할지라도"로, 제6쪽 제11행의 "잘 알고 있었다 판단되는"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6쪽 아래에서 제4행 ~ 아래에서 제2행의 "② B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51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를 "②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피고가 H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B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510,000,000원은 B의 상속분인 2/7 지분의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고, 이미 피고로서는 그 고유의 상속분인 2/7지분 상당액 중 일부까지 출연하여 B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함으로써 가액배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목적물인 B의 상속분 상당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 ~ 제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4/7지분을 상속받은 후 H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B의 채권자들에게 5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 완료 이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스스로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로서, 이미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따라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피고의 위 변제액이 B의 상속분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 제1심 판결 제7쪽 아래에서 제8행의 "피고 C가"를 "피고가"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9행의 "1,537,063,360원"을 "1,479,962,635원"으로, 제9쪽 제11행의 "439,160,960원(= 1,537,063,360원 × 2/7, 원 미만 버림)"을 "422,846,467원(= 1,479,962,635원 × 2/7, 원 미만 버림)"으로 각 고쳐 쓴다.

##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B의 다른 채권자인 K, Q, R, S, T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의 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510,000,000원을 변제하여 가액배상을 이미 마쳤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채권자인

대한민국과 U 주식회사가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므로, 피고 C로서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C로서는 이중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소송은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송으로, 재판상 청구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도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며, 그에 따른 취소와 원상회복만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게 되어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민법 제406조, 제407조 참조),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취소권이 제3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으로 하여금 취소권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게 하고 아울러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공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643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B의 다른 채권자들인 대한민국, U 주식회사가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쳤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설령 피고 C가 친동생인 B 대신 그 채무를 변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공시기능도 충분하지 못하므로, 확정판결에 기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구하는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분이 그 공동담보가치를 회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상윤**

**판사노호성**

**판사황기선**

**별지**